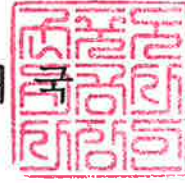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10월 3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5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직무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공사 임직원의 가족·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지 않는다.

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문 원 미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채용원칙) ① ~ ③ (생략) <신설> <신설>	제7조(채용원칙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<u>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⑤ <u>공사 임직원의 가족·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지 않는다.</u>
제8조(채용방법)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 채용을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긴급충원이 불가피할 때</u> 5. <u>계약직의 채용</u> 6. (생략) 7. <u>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② (생략)	제8조(채용방법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<삭제>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